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3년 3월 7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3월 9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계획 등의 수립·시행, 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각종 육성사업의 추진 또는 지원 등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반도체산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나. 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안 제5조 ~ 안 제10조)

다. 반도체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안 제11조)

라. 반도체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12조)

마. 육성사업의 수탁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안 제13조)

바. 반도체산업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안 제14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가. 제출배경

- 현행 조례는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2020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 반도체산업은 충북의 대표적 주력산업으로 전·후공정 기업의 높은 집적도를 기반으로 반도체 생산량 기준 전국 2위 수준의 산업규모를 갖추고 있어, 이를 더욱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조례 시행과정에서 위원회 운영 등과 사업추진에 있어 제도적 개선, 조문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전부개정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음

나.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본칙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2조는 “반도체산업”에 관한 정의로서, 현행 조례에 명시된 ‘반도체 관련 기술개발·인력양성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음
 -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은 반도체산업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삭제한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이 필요함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의 ‘반도체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노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음
 - 안 제2조와 마찬가지로 기술경쟁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중요한 책무라고 판단되는데, 이 조항을 삭제한 이유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6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부지사에서 **과학인재국장**으로, 부위원장을 호선에서 **업무 담당 과장**으로, 제4항에서 간사를 업무담당 과장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격하’한 것과
- 제5항에서 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때만 구성하고 심의·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려는 것은 관(官)주도로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이것은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각종 위원회가 과다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려는 것은 설득력은 있으나,
-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민간의 기술력과 경험 등 민간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민간(民間)주도가 아닌 관(官)주도의 위원회 운영은 획일화되고, 경직된 위원회 운영이 우려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관련 부서의 구체적이고 보편·타당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제3항제1호에서 위촉직 위원 중 충청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을 ‘삭제’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원의 참여 제한**과 제2호에서 공공기관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을 기업 지원기관 임원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안 제7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과 비교할 때, 안 제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제척 등의 사유를 제1호에서는 강화한 반면, 제3호에서는 완화하였음
- 제3호에서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증언, 감정 외에 진술, 자문, 연구, 용역을 삭제하여 제척·기피·회피 조건을 완화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안 제11조는 ‘반도체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으로 현행 제5조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의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임
 - 반면, 현행 조례 제8조의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조항은 지역산업체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신기술 연구개발 등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이나, 이를 전부개정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다. 종합의견

- 충청북도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반도체산업은 지역 혁신 성장의 구축이 되는 사업 중 하나로 ‘반도체 초강대국 실현을 위한 중부권 핵심거점 도약’을 위해 더욱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산업 분야임
- 이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각종 육성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한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를 통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되며, 조례안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다만, 정의와 책무 규정에서 인력양성 등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 위원회 구성을 현행 조례와 비교했을 때 ‘격하’한 것,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앞서 지적한 사항들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편·타당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